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52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속세 · 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엄태영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3
2.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정부안)	16
3.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서범수의원안,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23
4. 상속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 결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35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정부안, 오기형의원안)	49
6.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정부안, 오기형의원안) ..	53
7.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정비(차규근·김영환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박성훈의원안)	55
8.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정부안, 오기형의원안)	63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5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속세·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현행	임태영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 상속세 세율 (제26조)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20</td></tr><tr><td>~ 10억원</td><td>30</td></tr><tr><td>~ 30억원</td><td>40</td></tr><tr><td>30억원 초과</td><td>5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10</td></tr><tr><td>~ 30억원</td><td>20</td></tr><tr><td>30억원 초과</td><td>3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30억원	20	30억원 초과	30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10</td></tr><tr><td>~ 5억원</td><td>20</td></tr><tr><td>~ 10억원</td><td>30</td></tr><tr><td>10억원 초과</td><td>4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억원 이하</td><td>5</td></tr><tr><td>~ 5억원</td><td>10</td></tr><tr><td>~ 10억원</td><td>20</td></tr><tr><td>~ 30억원</td><td>30</td></tr><tr><td>30억원 초과</td><td>4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5	~ 5억원	10	~ 10억원	20	~ 30억원	30	30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30억원	20																																												
30억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5억원	20																																												
~ 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5																																												
~ 5억원	10																																												
~ 10억원	20																																												
~ 30억원	30																																												
30억원 초과	40																																												
☐ 증여세 세율 (제56조) ☐ 증여세 세율: 제 26조의 세율 적용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임태영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68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 3건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함으로써 상속인과 수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임태영의원안은 현행 20%~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과세표준 1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단일화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하여 현행 50%에서 30%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을 삭제하여,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시 40%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권성동의원안은 과표구간은 현행과 같이 하되, 현행세율에서 1억원 이하 과표구간은 5%p를, 그 외의 구간은 10%p 경감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증여세”라 함)의 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연혁]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세입확충이라는 조세 본유의 국고기능 이외에 복합적인 경제적·사회정책적 기능의 수행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속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① 상속세는 과세기법의 발달로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조세로서의

기능이 예전보다 감소한 반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사망 시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일궈온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자의 것보다 누진적으로 많이 과세함으로써 자본축적, 자산의 이전 및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여 경제활력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②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이 아닌 상당한 재산을 무상취득한 일부 부유한 상속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교육의 기회가 약화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의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므로 상속세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상속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¹⁾고 하며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상속세의 이러한 소득

1)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재분배 기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끊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상속세에 관한 논쟁은 비단 이러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둘러싸고, 제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경쟁 및 경합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 간의 출발점의 공평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논쟁 또한 내포하고 있어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본질적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숙의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의 변경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경제질서 및 사회철학적 가치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기저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이하에서 기술하는 상속세제의 부담 완화 주장과 그 반대 입장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및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고용의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속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일부 실증 연구²⁾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결과³⁾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2)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10., 송헌재·조하영)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2010, Ellul·Pagano·Panunzi)

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은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부유층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한 생산력 증대 및 혁신에 대한 기회의 제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 증대 기회마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임.

둘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에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대비 1.76배로 증가하였고, 2023년 1월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1월 대비 종합주택의 경우 2.13배, 아파트의 경우 2.68배로 각각 증가하였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소비자물가지수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 3) 수출기업 799개 중 74.3%가 가업승계 이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4.1월)
 수출기업 799개 중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부담 등 제반 가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국무역협회, '24.1월)
 중소기업 625개 중 65.3%가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높은 세금부담’을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23.4월)
 30~40대 벤처 CEO 140명 중 대부분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 (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 (경총, '23.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3.1
종합주택	46.0	60.8	76.4	84.9	100.0	98.2
아파트	35.8	55.2	70.8	82.3	100.0	96.1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100 기준

한편,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수는 2000년 1조원 규모에서 2023년 14.6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에서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6%에서 2023년 4.25%로 4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상속공제 수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⁴⁾.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추이]

(단위: 조)

구분	'00	'05	'10	'15	'20	'21	'22	'23
국세(A)	92.9	127.5	177.7	217.9	285.5	344.1	395.9	344.1
상증세(B)	1.0	1.9	3.1	5.0	10.4	15.0	14.6	14.6
비중(=B/A)	1.06%	1.47%	1.73%	2.31%	3.63%	4.36%	3.69%	4.25%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OECD 등 국제비교 시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이 높아 자산가들의 해외이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임⁵⁾.

4) 과세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재산은닉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임.

5) KNN, “세계 최고 ‘상속세율’ … 경영권 팔거나 해외로”, 2018. 11. 21.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6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고,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두고 있는 24개 국가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로 조사됨⁶⁾.

또한,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 또한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조사됨⁷⁾.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0.3	0.4	0.4	0.5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2	0.1
G7	G7 평균	0.2	0.2	0.2	0.2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6	0.6	0.7	0.7	0.2
	독일	0.2	0.2	0.2	0.3	0.3	0.2	0.1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4	0.4	0.4	0.5	0.5	0.2
	영국	0.2	0.2	0.2	0.2	0.3	0.3	0.1
	미국	0.2	0.1	0.1	0.1	0.1	0.2	0.0

주: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일본 55%, 대한민국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 26%, 기획재정부

7)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314-315p.,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1.2	1.5	1.6	1.9	2.4	2.1	0.9
OECD 평균		0.3	0.3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3	0.7	0.6	0.7	0.8	0.6	0.0
	캐나다	0.0	0.0	0.0	0.0	0.1	0.1	0.0
	프랑스	1.1	1.3	1.4	1.4	1.6	1.5	0.4
	독일	0.4	0.5	0.5	0.7	0.7	0.6	0.2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1	1.3	1.3	1.3	1.5	-	0.4
	영국	0.6	0.8	0.7	0.8	0.8	0.8	0.2
	미국	0.6	0.5	0.4	0.5	0.6	0.6	0.0

주: 1.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1년과 2013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회원국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4개국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이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의 7개국은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⁸⁾.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8)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314p.

상속세 부담의 완화에 대한 주장은 국제조세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이와 같은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자산가의 이민과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임.

□ 반면, 상속증여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6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1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⁹⁾는 2017년 0.584에서 2022년 0.606으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2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5,602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903	-0.2
순자산 2분위	2,565	0.8	2,922	0.6
순자산 3분위	6,187	2.0	7,510	1.6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86	2.9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558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9,336	6.4
순자산 7분위	29,536	9.4	41,381	9.1

9)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2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8,816	12.9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6,731	19.0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6,226	43.0

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와 같이 자산불평등도가 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증여세를 인하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정부안의 경우 세율인하 효과가 가장 부유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정부안은 과세표준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구간을 제외하면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인하 효과가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부자감세’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임.

[정부안 세율인하 효과]

과표구간	세율 변동	세율인하 폭
1억 이하	10% → 10%	—
1억 초과 2억 이하	20% → 10%	△ 10%
2억 초과 5억 이하	20% → 20%	—
5억 초과 10억이하	30%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 40%	—
30억 초과	50% → 40%	△ 10%

둘째, 우리나라의 명목 상증세율은 높은 편이나, 총상속재산가액이

매우 높은 일부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며, 세부담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023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인적·물적 상속공제 적용 전) 기준 23.1%, 과세표준(인적·물적 상속공제 적용 후) 기준 36.1% 수준이고, 총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건(16,727명, 83.9%)에 대한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기준 6.9%¹⁰⁾, 과세표준 기준 18.7%¹¹⁾에 불과함.

[2023년 총상속재산가액별 상속세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

총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수	상속세 과세가액 (A)	과세표준 (B)	총결정세액 (C)	실효세율 (C/A)	실효세율 (C/B)
계	19,944	53,230,138	34,031,387	12,290,143	23.1	36.1
1억 이하	84	4,971	3,149	91	1.8	2.9
3억 이하	312	60,710	39,055	1,209	2.0	3.1
5억 이하	239	90,673	56,201	2,932	3.2	5.2
10억 이하	5,026	3,527,079	976,412	110,177	3.1	11.3
20억 이하	8,305	10,702,313	3,519,225	612,206	5.7	17.4
30억 이하	2,761	5,979,985	2,885,847	675,378	11.3	23.4
50억 이하	1,928	6,454,590	3,705,596	1,052,511	16.3	28.4
100억 이하	850	5,132,936	3,398,380	1,173,508	22.9	34.5
500억 이하	402	6,487,369	5,137,024	2,064,695	31.8	40.2
500억 초과	37	14,641,782	14,228,104	6,587,034	45.0	46.3
경정		147,731	82,396	10,40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작성

또한, 소득세와 상속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를 통해 축

10) 총상속재산가액 30억이하의 결정세액 합(1,401,993백만원) / 과세가액 합(20,365,731백만원)

11) 총상속재산가액 30억이하의 결정세액 합(1,401,993백만원) / 과세표준 합(7,479,889백만원)

적한 재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세제로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분배기능 측면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부담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임.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연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3.6	4.9	4.8	5.2	6.1	6.6
G7 평균	9.3	9.7	9.7	10.0	10.2	10.4
OECD 평균	7.7	7.9	8.0	8.3	8.3	8.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완화 및 기업승계 지원이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재분배기능의 약화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 간 기초부존자원의 차이가 ‘기회의 평등’을 제약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른 불공평이 사회적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일부 연구결과¹²⁾ 등을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

12)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으나,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순환과 작동에 필수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경제주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주체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공평으로 인한 기회의 제약이 사회적 창 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하여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 국제적 동향,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

2.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정부안)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신설> ○ 공제한도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대상 - 일반기업: (현행과 같음) -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주주환원(밸류업) 우수기업: ①, ② 모두 충족 ① 5년간('25~'29)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②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투자 및 R&D지출(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② 모두 충족 ①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요건 충족 ② 5년간('25~'29) 고용 유지 ○ 공제한도 <table><tr><th rowspan="2">가업영위기간</th><th colspan="2">공제한도</th></tr><tr><th>일반</th><th>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d>6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d>8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d>1,200억원</td></tr></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일반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6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 개정안은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정부측 표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더하여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를 각각 두 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¹³⁾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공제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¹⁴⁾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14)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개정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포함시키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두배로 각각 두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

구분	세부 요건
주주환원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투자 및 R&D 지출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자료 : 기획재정부

□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첫째, 주주환원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우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이른 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국내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우대는 최대주주인 대표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

의 배당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임.

[주요국 배당성향]

(단위: %)

구 분		신홍국					선진국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평균
배당성향	2023년	40.5*	57.6	30.5	64.7	45.2	37.1	36.2	42.5	42.2
	10년평균	26.0	55.0	31.3	38.5	39.6	42.4	36.0	129.4	49.5

*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 기록

주: 신홍국과 선진국은 MSCI 지수에 따른 분류에 따름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둘째, 투자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투자 여건의 악화로 기업의 투자유인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인 대표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확대는 기업의 투자확대 의사결정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셋째,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최대주주인 대표의 귀속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업의 배당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최대주주인 대표가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혜택이 귀속되지만, 상속공제의 혜택은 전적으로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주주환원과 투자 확대에 관한 경제적 유인으로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첫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이 기업의 배당 및 투자를 확대시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지는 정책경로 상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개재된다는 것임. 즉,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배당 및 투자 확대로 직결되기에는 기업의 배당의사 결정이나 투자의사 결정에서 고려하는 요인이 다양하여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임. 특히, 개정안은 주주환원 및 주자 확대 등의 요건 충족기간이 5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고,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또한 한정적 이어서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상속인과 현행의 공제한도(300억원~600억원)가 부족할 정도로 가업의 자산규모가 큰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적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2014.12.)에서 사업용 자산의 무상취득에 대한 특권이 타당성 심사 없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경우 이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

현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임.

셋째,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혜택이 귀속되는 최대주주인 대표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이나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가령, 기업은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사내유보금 확대 등을 통해 자본축적이 필요하거나 투자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기업 대표 입장에서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배당이나 투자를 확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은 최대주주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임.

넷째,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8%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적용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가업상속 공제한도의 적용실적이 적는데, 이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갖는지 의문시되는 면이 있다는 것임.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

(기준 일자: 2022년 결산, 단위: 개, %)

매출액	1천억 미만	1~3천억	3~5천억	5천억~1조	1조 이상	계
업체수	3,311	1,456	386	270	153	5,576
비중	59	26	7	5	3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기본통계」('23.12.)

[최근 5년간 가업상속 공제 적용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건수	88	106	110	147	188
건당 평균공제액	26.2	34.8	31.4	25.6	43.1
전체 공제금액	2,303	3,685	3,454	3,761	8,112
공제 한도 적용 건수	0	0	0	0	3

자료 : 국세청

3.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서범수의원안,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한도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table> ○ 사후관리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유지 2) 가업 종사 3) 주식등 상속 시 지분 유지 4)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대상 - 일반: (현행과 같음)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특례: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박성민의원안) 전체 중견기업 포함(정부안) -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특례: 법인인 중소기업으로 한정(서범수의원안) ○ 공제한도 상향 - 일반 가업상속: (현행과 같음) - 특구 가업상속: <table><tr><th rowspan="2">가업영위기간</th><th colspan="3">기회발전특구</th><th>도심융합특구</th></tr><tr><th>박성민의원안</th><th>구자근의원안</th><th>정부안</th><th>서범수의원안</th></tr><tr><td>10년 ~ 20년</td><td>400억</td><td>600억</td><td>한도 없음</td><td>한도 없음</td></tr><tr><td>20년 ~ 30년</td><td>600억</td><td>800억</td><td>한도 없음</td><td>한도 없음</td></tr><tr><td>30년 이상</td><td>1,000억</td><td>1,200억</td><td>한도 없음</td><td>한도 없음</td></tr></table> ○ 사후관리 -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가업영위기간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10년 ~ 20년	400억	6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20년 ~ 30년	600억	8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30년 이상	1,000억	1,2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10년 ~ 20년	400억	6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20년 ~ 30년	600억	8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30년 이상	1,000억	1,200억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현행	개정안
급여액 90%유지 - <신설>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2조의2) ○ 요건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상속 - 가업상속공제(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것	- <u>가업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박성민·구자근·서범수의 원안)</u> - <u>본사가 기회발전특구외 타 지역으로 이전 혹은 기회발전특구내 상시 근무인원이 전체 기업 상시근무인원의 절반 미만(정부안)</u>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 요건 완화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u>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 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함</u>)을 상속(박성민의원안) - (현행과 같음)

* 서범수의원안 2024. 6. 4. 발의(의안번호 122), 박성민의원안 2024. 6. 25. 발의(의안번호 923), 구자근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4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 4건의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혹은 도심융합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 등”이라 함)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안은 상속개시일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현행의 2배로 상향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기회

발전특구 외의 지역 이전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박성민의원안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상향하며, 5년 이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 이전 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특례 적용대상을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부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을 제외¹⁵⁾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 소재 본사 및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이상일 것 등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15) 정부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중에서도 수도권지역 등 아래 지역은 제외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것으로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내용임. 또한 사후관
리규정으로 본사의 의무적 상시근무 인원 요건을 5년간 충족하도
록 하고 있음.

서범수의원안은 전술한 개정안 등과는 달리, “도심융합특구” 내에
본사가 소재한 가업 중 법인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5년 이내 도심융합특구 외
의 지역 이전 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구분		일반 (현행)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박성민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정부안	서범수의원안
적용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1조원 미만 중견기업 추가	현행과 같음	전체 중견기업 추가	법인 중소기업만 적용
공 제 한 도	10년 ~ 20년	300억	400억	6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20년 ~ 30년	400억	600억	8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30년 이상	600억	1,000억	1,200억	한도없음	한도없음

□ 현행법¹⁶⁾은 중소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정 공제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¹⁷⁾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자산·지분·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상속세를 부과하여 경영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지되고,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17)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근로자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 금액	가업상속재산 ¹⁸⁾ 의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사후관리 (5년간)	①(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②(지분유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③(고용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 유지 ④(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4건의 개정안은 지방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시 공제대상을 확대¹⁹⁾하고, 공제 금액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과 창업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18)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19) 예외적으로, 서범수의원안은 법인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함.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특구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²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음²¹⁾.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²²⁾.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인구, 산업 등 수도권 과밀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비 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임.

그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50.6%)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765	516	51,836	516	51,770	515	51,673	514	51,713	515
수도권	25,851	2,179	26,021	2,193	26,069	2,196	26,086	2,197	26,190	2,206

자료: 통계청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기준 수도권 총생산은 1,137조원으로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903	1,927	1,945	2,084	2,166
수도권	992	1,003	1,025	1,100	1,137
수도권 비중	52.1	52.0	52.7	52.8	52.5

자료: 통계청

둘째,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의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의 상향은 매출액 및 기업자산 규모가 큰 기업으로 하여금 기회발전 특구 등으로의 이전을 유인할 수 있고, 큰 규모 기업의 이전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현재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다른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도 상속받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면 공제 한도액에 따른(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각 300억, 400억, 600억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들 큰 규모 기업의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것임.

셋째, 가업상속 공제확대의 혜택은 최대주주인 대표²³⁾에게 귀속되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

는데, 기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은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세제 지원²⁴⁾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도 있음.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지분만큼 혜택이 귀속되지만, 상속 공제의 혜택은 대표에게 전액 귀속되므로, 기업 이전에 관한 경제적 유인으로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이전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양하고,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이익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형량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확대가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특히,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비용과 경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기업 이전’을 선택할 기업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4)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둘째,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인 대표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수단이기도 하나, 이처럼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내린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가령, 적지 않은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고 경영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기업 이전이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주주인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이전비용, 경영의 비효율성 등은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최대주주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가 함께 부담하게 됨.

셋째,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상속인과 현행 공제한도액(300억원~600억원)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특히 정부안의 경우는 상속재산의 공제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여 고액 자산가에 대하여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적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2014.12.)에서

사업용 자산의 무상취득에 대한 특권이 타당성 심사 없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경우 이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규모 연혁]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09.1.1.~2011.12.31.	10년이상~15년미만	6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2012.1.1.~2013.12.31.	10년이상~15년미만	1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2017.12.31.	10년이상~15년미만	2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2018.1.1.~ 2022.12.31.	10년이상~20년미만	2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2023.1.1.~ 현행	10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4. 상속공제 확대(김은혜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초공제(제18조) ○ <u>2억원</u> 공제 ☐ 배우자공제(제19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공제 ○ 최대한도: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u>30억원</u>) ○ 최소한도: <u>5억원</u>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기타 인적공제(제20조) ○ 자녀공제: 1인당 <u>5,000만원</u> ○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제21조) ○ 공제액: Max [<u>5억원</u>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 기초공제 확대 ○ <u>5억원</u> 공제(김은혜의원안) ☐ 배우자공제 확대 ○ (현행과 같음) ○ 최대한도: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u>60억원</u> (<u>최은석의원안</u>)) ○ 최소한도: <u>7.5억</u> (안도걸의원안) <u>10억원</u> (임광현·송언석의원안) <u>12억원</u> (권성동의원안) <u>20억원</u> (최은석의원안)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기타 인적공제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u>5억원</u> (정부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괄공제금액 상향 ○ 공제액: Max [<u>7.5억</u> (안도걸의원안), <u>8억원</u> (임광현의원안), <u>10억원</u> (김은혜·권성동·송언석의원안),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 김은혜의원안 2024. 7. 16. 발의(의안번호 1775), 최은석의원안 2024. 8. 21. 발의(의안번호 3027), 임광현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99), 안도걸의원안 2024. 8. 23. 발의(의안번호 3143),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송언석의원안 2024. 9. 24. 발의(의안번호 4210)

□ 7건의 개정안은 기초공제 금액, 일괄공제 금액,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상속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안은 기초공제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고,

최은석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최대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며,

임광현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10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은 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안도걸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와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며,

정부안은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권성동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는 12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고,

송언석의원안은 배우자공제 최소한도와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임.

구분	현행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Min(30억,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Max(5억원 ,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개정안
5억원(김은혜의원안)
최소 7.5억(안도걸의원안), 10억원(임광현·송언석의원안) 12억원(권성동의원안) 20억원(최은석의원안)
최대 Min(60억원(최은석의원안)
자녀: 1인당 5억원(정부안)
Max(7.5억(안도걸의원안) 8억(임광현의원안) 10억원(김은혜·권성동·송언석의원안)

□ 현행법 제18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한 모든 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두고, 제19조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제20조에서 배우자가 아닌 자의 인적공제(이하 “기타 인적공제”라 한다)를 규정하며, 제21조는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 결정방식으로서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거나 없더라도 최소한 5억원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씩 공제하는 자녀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²⁵⁾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期待餘命)²⁶⁾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음.

25)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을 말함.

26) “기대여명(期待餘命)”은 특정연도에 특정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함(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개요]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일괄공제

□ 인적공제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 금액은 개정이 없었음.

기타 인적공제는 공제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성년 기준의 변경 및 장애인 기대여명의 합리화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2015년 세법개정 시 자녀 인적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인적공제액은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간 5백만원씩 공제에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간 1천만원씩 인상되었음. 연로자 공제액은 연로자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되 공제액은 노인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은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까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인적공제 기준 및 금액 변경 연혁]

구 분			1996년 이전	1997~2010년	2011~2015	2016~현재
기초공제			1억원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5억~30억원		
기 타 인 적 공 제	자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미 성 년 자	성년기준	20세			19세
		연간 공제금액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연 로 자	연로자 기준	남 60세 여 55세	60세		65세
		공제액	3천만원			5천만원
	장 애 인	기대여명 기준	75세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간 공제금액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일괄공제			-	5억원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물가상승을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음.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금액의 경우 199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 변동,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상증세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1997년 당시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7, 2023년 물가지수는 111.6으로서, 물가가 95.8%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7년의 5억 원은 2023년 기준 약 9.8억원의 가치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소비자 물가지수	56.977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주택 매매가격지수]

구분	1997.1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3.1	2024.7
종합주택	50.1	46.0	60.8	76.4	84.9	100.0	98.2	95.9
아파트	37.0	35.8	55.2	70.8	82.3	100.0	96.1	93.0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둘째, 이와 같은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과 과세대상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될 수 있으므로, 면세점 역할을 하는 상속공제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임²⁷⁾.

1997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805명이었는데, 2023년 19,944명으로 7.1배 증가하였고, 전체 피상속인 대비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비율도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

연도	1997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전체 피상속인	270,144	211,619	227,004	325,045	324,349	351,648	292,545
과세대상	2,805	1,389	1,816	4,547	6,592	10,181	19,944
과세미달	267,339	210,230	225,188	320,498	317,757	341,467	272,601
과세비율(%)	1.0	0.7	0.8	1.4	2.0	2.9	6.8

자료: 국세통계연보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세 부담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7) 동아일보,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2023. 11. 15.)
 중앙일보, "상속세, 중산층도 납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2024. 4. 20.)
 mbc뉴스 "최상목,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단순 부자 감세 아냐" (2024. 7. 25.)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도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0.3	0.4	0.4	0.5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2	0.1
G7	G7 평균	0.2	0.2	0.2	0.2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6	0.6	0.7	0.7	0.2
	독일	0.2	0.2	0.2	0.3	0.3	0.2	0.1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4	0.4	0.4	0.5	0.5	0.2
	영국	0.2	0.2	0.2	0.2	0.3	0.3	0.1
	미국	0.2	0.1	0.1	0.1	0.1	0.2	0.0

주: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1.2	1.5	1.6	1.9	2.4	2.1	0.9
OECD 평균		0.3	0.3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3	0.7	0.6	0.7	0.8	0.6	0.0
	캐나다	0.0	0.0	0.0	0.0	0.1	0.1	0.0
	프랑스	1.1	1.3	1.4	1.4	1.6	1.5	0.4
	독일	0.4	0.5	0.5	0.7	0.7	0.6	0.2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1	1.3	1.3	1.3	1.5	-	0.4
	영국	0.6	0.8	0.7	0.8	0.8	0.8	0.2
	미국	0.6	0.5	0.4	0.5	0.6	0.6	0.0

주: 1.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1년과 2013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거에 비하여 상속세 과세인원이나 과세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속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에게 보다 큰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의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 확대 효과는 5억원 수준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는 반면, 1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세액감면 효과가 있음.

셋째, 부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제상 유리한 점이 적어진 증여가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늦추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제방식(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과 공제금액 수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첫째,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는 그 합계액이 일괄공제금액(5억원)보다 높을 때 적용되므로, 인적공제의 선택기준인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금액’의 형평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괄공제 금액 상향 수준에 맞게 기초공제도 일정 부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현재에도 미성년자나 연로자, 장애인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7명이 있어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액(5.5억원)이 일괄공제액(5억원)보다 커져 기타 인적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일괄공제 금액만 상향되면 기타 인적공제의 활용도가 현재보다 더 감소하여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한편, 기초공제는 다른 상속공제 제도와는 달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²⁸⁾되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거주자, 비거주자 결정 비율(2023년)]

(단위: 건, 억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피상속인 수	19,888	56
총상속재산가액	516,123	1,125
총결정세액	122,371	426

자료: 국세청

²⁸⁾ 비거주자는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받음.

둘째, 배우자공제의 최소한도(법 제19조제4항²⁹⁾에 따른 공제를 말함)는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있는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가액과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점을 추가로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⁰⁾.

한편, 배우자공제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 시 과세될 수 있는 점, 이러한 사유로 OECD의 많은 국가들이 배우자의 상속세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³¹⁾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면세점 역할을 하는 다른 공제와는 달리, 최고한도 상향의 혜택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 중에서도 보다 부유한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30) 개정안별 배우자공제 상향 효과는 0p. 참조

31) 김영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112p,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셋째,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규모를 달리하여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가령, 한 자녀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하여 7억원, 두 자녀의 경우 12억원, 네 자녀의 경우 22억원의 공제 효과가 발생함.

[참고: 2023년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³²⁾]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가구 수	1,986,795	2,168,505	398,258	32,582	4,601
비율(%)	43.28	47.24	8.68	0.71	0.1

자료: 통계청

다만, 출산·양육 확대를 위한 다자녀 우대라는 정책 수단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부유층에게만 적용되는 점, 일괄공제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직권으로 공제³³⁾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는데, 자녀공제는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5억원 규모의 자녀공제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일괄공제를 대체하는 면세점으로서 적합할 수 있으나, 현행의 유산세 과세방식 하에서는 자녀공제의

32) 집계대상은 만18세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수(2자녀~5자녀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자녀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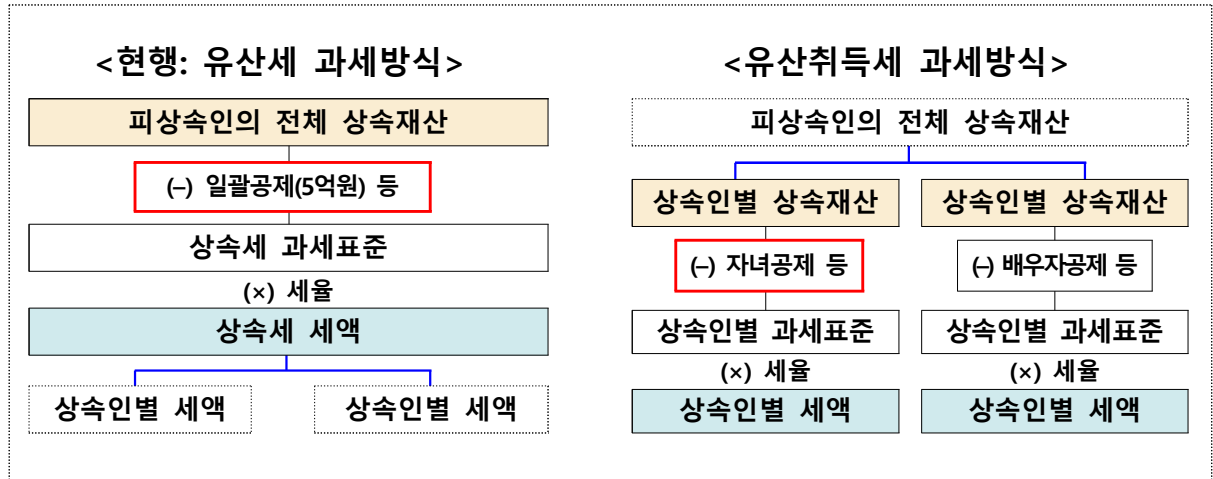
33)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동 적용되나, 기초공제+인적공제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있어야 하고 과세당국에서 각각의 인적공제 해당 여부, 인적공제액에 대한 계산 및 검증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효과가 해당 자녀에게 귀착되는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³⁴⁾, 일괄공제보다 적합한 공제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비교]



끝으로, 공제금액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제금액 수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인원 및 세수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34) 가령, 현행의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정부안에 따라 자녀공제 20억원(4명의 자녀를 가정)을 받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각 자녀에게 각각 5억원의 공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각 자녀가 분할 받은 상속재산 분만큼 귀속됨.

[참고:개정안별 인적 공제금액 합계 시뮬레이션]

구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자녀공제	일괄공제	인적 공제금액 합계		
					배우자有	배우자無	평균
현행	2억원	5억원	5천만원	5억원	10억원	5억원	7.5억원
정부안(자녀1명)	2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12억원	7억원	9.5억원
안도걸의원안	2억원	7.5억원	5천만원	7.5억원	15억원	7.5억원	11.3억원
김은혜의원안	5억원	5억원	5천만원	10억원	15억원	10억원	12.5억원
임광현의원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8억원	18억원	8억원	13억원
정부안(자녀2명)	2억원	5억원	10억원	5억원	17억원	12억원	14.5억원
송언석의원안	2억원	10억원	5천만원	10억원	20억원	10억원	15억원
최은석의원안	2억원	20억원	5천만원	5억원	25억원	5억원	15억원
권성동의원안	2억원	12억원	5천만원	10억원	22억원	10억원	16억원
정부안(자녀3명)	2억원	5억원	15억원	5억원	22억원	17억원	19.5억원

*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미적용, 정부안 외에는 일괄공제 적용, 배우자공제는 최소공제액만 적용 가정. 전문위원실 작성

[참고:2023년도 총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피상속인 수]

구분	5억 원 이하	5억원- 10억원	10억원- 11억원	11억원- 12억원	12억원- 13억원	13억원- 14억원	14억원- 15억원	15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30억원 초과
피상속인 수	635	5,026	1,140	1,223	1,115	1,100	876	2,851	2,761	3,217
누계	635	5,661	6,801	8,024	9,139	10,239	11,115	13,966	16,727	19,944

자료: 국세청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등 - <신 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0)

□ 2건의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5조의5³⁵⁾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 혹은 현저히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등에게 부여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정법인에 무상지원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재화·용역 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가령, 자녀소유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특정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인 증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특정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
· 특정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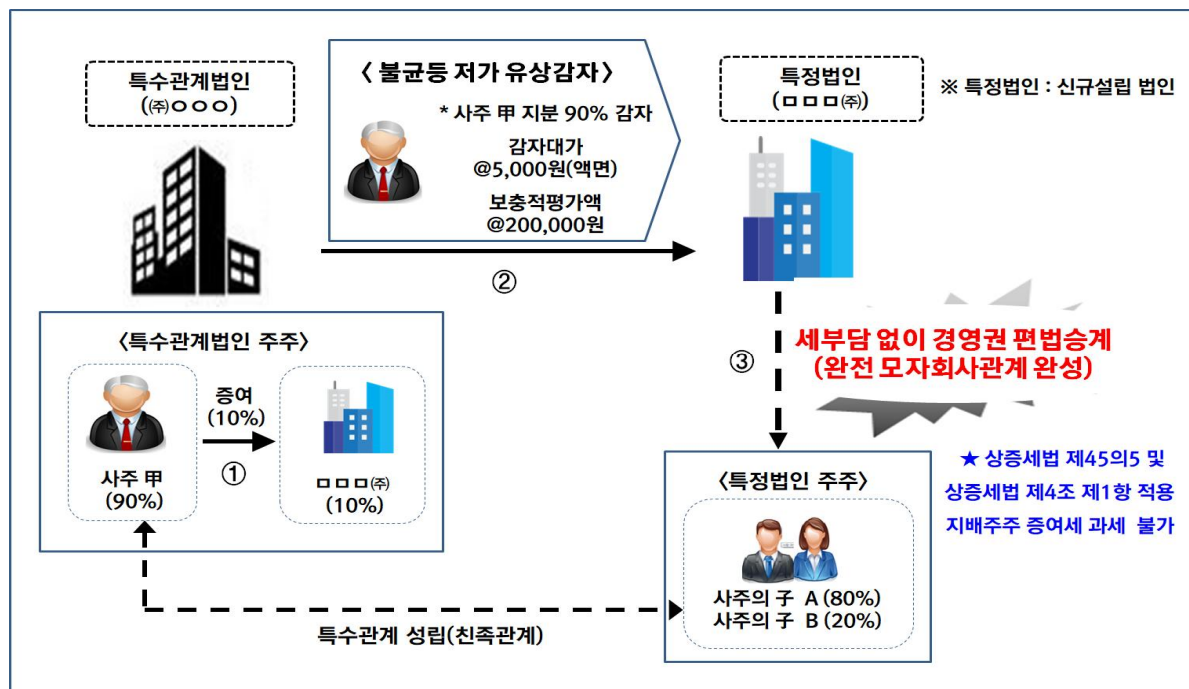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식”의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가령, 특수관계법인의 사주가 자녀의 특정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다수 혹은 전부를 소각하는 경우 특정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의 가치와 지분율이 올라가고, 상향된 지분율로 자녀의 특정법인이 사주의 특수관계법인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 혹은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등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것임.

[조세회피 예시]



*불균등 감자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주)○○○의 경영권을 지배주주 자녀의 세부담 없이 편법승계하여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사례

- 이에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³⁶⁾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 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변칙적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36)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6.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공제(제53조)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향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0)

☐ 개정안은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히려는 것임.

☐ 정부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 범위³⁷⁾의 경우에도 종래 ‘6

37)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된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 범위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안 수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친족은 수증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은 세법의 적용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고 보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또는 정비(차규근·김영환 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박성훈의원안)

현 행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차규근·김영환의원안
☐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 63조)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 ○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재산가액 평가 시 일정 비율 할증 - 할증률: 100분의 20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삭 제></u>	☐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세청장은 할증률이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할증률을 조정 ○ 최대주주등은 결정된 할증률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할증률을 재산정 요청

* 차규근·김영환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62),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박성훈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41)

□ 4건의 개정안은 최대주주등³⁸⁾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박성훈의원안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할증평가에 따른 기업 상속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이고,

차규근의원·김영환의원안은 할증평가 제도는 유지하되, 할증률이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재산정하여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³⁹⁾에 따르면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매일 공

38)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됨.⁴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은 최대주주⁴¹⁾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로 불리는데, 일반주주의 주식과 달리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가치를 재산가액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미인식가치이론’과 ‘사적이익이론’이 있음.

미인식가치이론은 현재 회사가 잘못된 경영으로 내재된 잠재력에 비해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권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대이익 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임.

사적이익이론은 경영권을 획득하면 회사의 재산을 사익목적을 위해 유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익 증가분의 현재가치만큼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임.

40) 비상장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 또는 감정평가 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함.

41) 최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1993년에 도입하여, 처음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1997년 이후 모든 법인의 주식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 것은 2000년부터인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할증률을 50% 경감하여 적용하였음. 중소기업은 주식의 소유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 적용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임.

이후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말까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⁴²⁾ 2019년 세법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삭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반영하였음.

2020년부터는 비(非)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율을 20%로 단일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2)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연도별 할증평가율 연혁]

구분	'93.1.1	'00.1.1.	'03.1.1.~'19.12.31.		'20.1.1.이후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10%	20%	20%
지분율 50% 초과		30%	15%	30%	

주 1) 2005년부터 중소기업 할증평가 적용 배제

2)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할증평가 적용 배제

자료: 기획재정부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⁴³⁾,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⁴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은 엄격하여 기업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한 높은 세부담은 기업인으로 하여금 경영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재원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둘째, 상속 증여시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에서의 인수합병거래와 달리 보아야 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활동 기여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임.

43) 일본: 55%, 대한민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기획재정부)

44)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세 부담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도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셋째, 일률적인 할증률(2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할증평가 방식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률적인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국가는 파악되지 않는다⁴⁵⁾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일반주식보다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임. 통상적으로 의결권이 포함된 보통주의 가격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상당 수 거래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⁴⁶⁾.

둘째, 헌법재판소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

45) 기획재정부 의견임

46) 2012년~2020년 중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계약에 대한 표본 분석결과 28%~41%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황선필,조형태,윤재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제2호 2022년 6월.

고 있으므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⁴⁷⁾).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2008. 12. 26. 2006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 적용일 뿐, 이러한 가산율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7) 헌재 2002헌바65, 2003. 1. 30. 판결
헌재 2006헌바115, 2008. 12. 26. 판결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할증평가 제도는 유지하되, 20%의 할증률이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재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차규근·김영환의원안은

개별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질과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기업상황과 그에 부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발생과 과세당국의 재량적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 제기로 쟁송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청장이 할증률을 조정함에 있어 비록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인 국세청장에게 할증률 조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과 입법기술상 한계에 따른 행정부에 대한 재량 허용범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정부안, 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2조) ○ 제출 대상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 전환사채등의 발행 인수인에 관한 사항 - <신 설>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현행과 같음) - <u>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u>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오기형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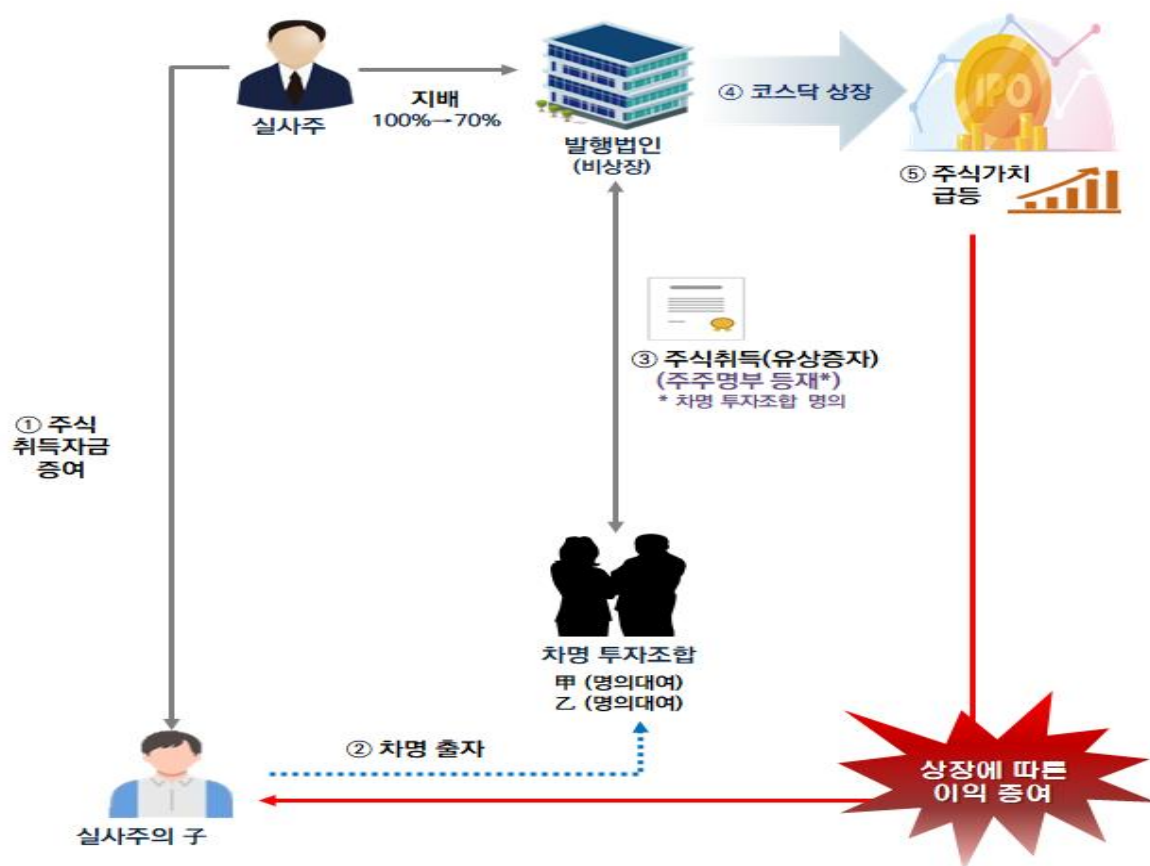
☐ 2건의 개정안은 투자조합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투자조합이 증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2조는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상속·증여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지급명세서 및 명의변경 내용,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등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최대주주 등이 지배권을 확대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적 증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조합을 이용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주식등 상장이익의 탈루(예시)]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직전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함에도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

문 의 처
02)6788-5161